

담양군 이상 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담양군 이상 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11. 13.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이상 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최근 담양군에 폭염, 폭우 등 이상 기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상 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양군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이상 기후, 폭염, 폭우, 폭설, 한파 등 용어의 뜻 정의

나. 예방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예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폭염 · 폭우 · 폭설 · 한파 피해 저감 · 방지사설 설치 및 운영
- 무더위 · 한파 쉼터 등 설치 및 운영
- 재난취약지역 피해 예방 및 지원
- 재난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저감 · 방지사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 단독주택(개소 당 2백만원 이하), 공동주택(개소 당 5백만원 이하)

4.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13. ~ 11. 18.(5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이상 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11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이상 기후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 기후로부터 담양군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 기후”란 폭염·폭우·폭설·한파 등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기후를 말한다.
2.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3. “폭우”란 집중호우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호우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4. “폭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5. “한파”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6. “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담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람
 - 나. 그 밖에 군수가 이상 기후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재난취약지역”이란 이상 기후에 의한 재난 발생 위험이 크거나 재

난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상 기후로부터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이상 기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폭염·폭우·폭설·한파 현황 및 전망
3.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
5. 재난취약지역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6. 재난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예방 및 지원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방 및 지원 사업) 군수는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 저감·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2. 무더위·한파 쉼터 등 설치 및 운영
3. 재난취약지역 피해 예방 및 지원
4. 재난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대상) 군수는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저감·방지시설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저감·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9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폭우·폭설·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